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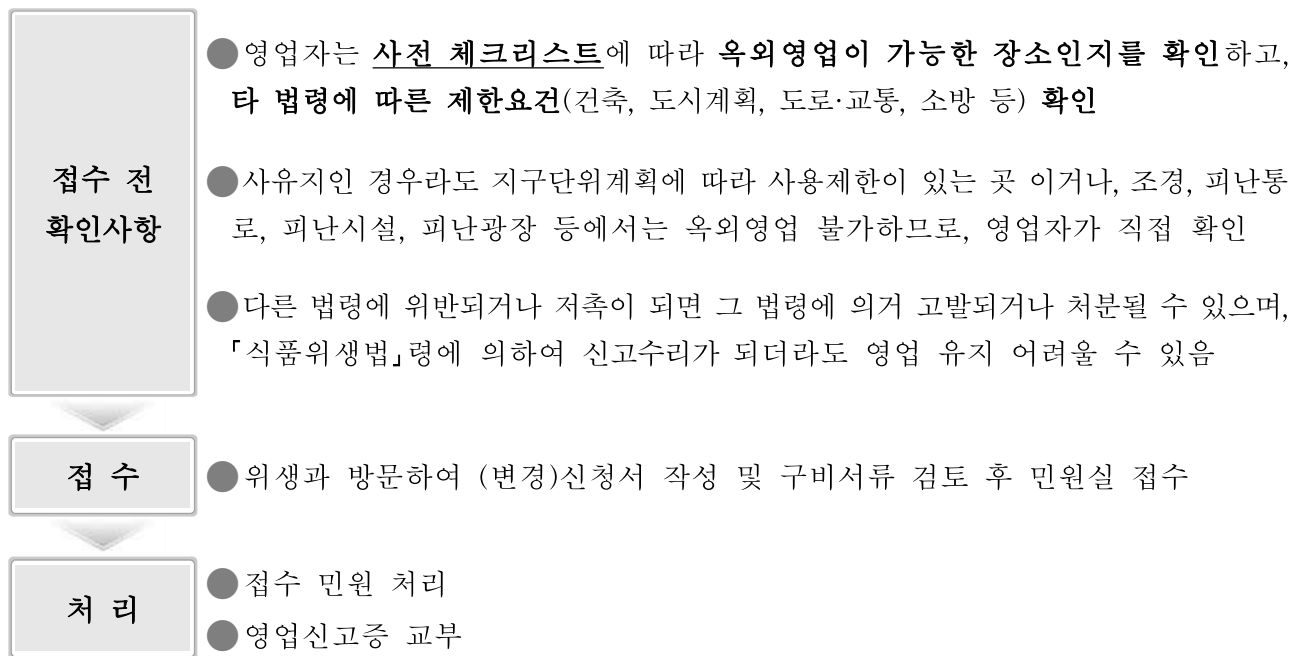
1. 허용 업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2. 옥외영업 허용 장소(공간)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3. 영업 신고 절차



4. 옥외영업 가능여부 및 제한사항

- 가능여부 확인: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 사용 계약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제한사항 검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등 타 법률에 저촉되는지 영업자 본인이 직접 검토

5. 영업(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①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② 평면도 (옥외영업장 표기)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공지, 공개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단독건물의 경우만)

옥외영업장 면적(해당건물 및 토지)의 소유주 확인 서류

④ 옥외영업장의 사용 계약서

⑤ 집합건축물 관리단 승인 서류

통상적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간의 사용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집합건축물 관리단의 옥외영업장 사용 승인 서류

⑥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자체규약)

-각 지자체별 표준규약 및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별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 등에 따라 해당 장소를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동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확인)한 서류를 통해 옥외영업장의 전용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관리단이 없는 경우 소유주의 3/4 이상의 동의 필요

⑦ 점용 허가증(공공용지인 경우)

⑧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⑨ 음식점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해당 부서 위반사항 여부를 직접 체크해야하므로 변경신고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번 서류

목외영업장 사용계약서

임대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영업장 사용	영업장주소	
	위 치	
	면 적 총 m ² (가로 m × 세로 m)	
	계약기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사용 계약하고 본 서를 제출합니다.

이
고
다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옥외영업장 사용부분을 표시한 시설사진
------	----------------------

⑤번 서류

- 집합건물 -
전용사용부분 확인서

집합건물 관리단	건축물명칭	대표자(관리인)	
	주 소	전화번호	
구분소유자 (임대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점유자 (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용 사용부분 확인	영업장소재지		
	전용사용부분 (발코니, 상가용건물앞대지, 옥상 등)	면 적	총 m ²
	전용사용권자	(가로 m × 세로 m)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집합건물 중 옥외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을 위와 같이 확인하고 본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집합건물관리단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개별 집합건물 자체 규약 사본
------	------------------

⑧번 서류

☐ 옥외영업 시설 사진 (옥외영업장 사용부분 표시)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 유지 어려울 수 있음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제4조 관련)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서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	☐

☐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시설물 설치 제한되는지 여부	☐	☐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도로법」 확인사항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주차장법」 확인사항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옥외영업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의 위반(저촉) 사항 발견 시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행정처분 등)를 감수하겠습니다.

신고인

성 명
주 소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추락사고·차량안전사고 방지

가. 난간의 설치 및 안전관리

-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 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고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보호 난간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시설물관리

가. 옥외영업장 시설물

- 1)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영업장 신고면적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3)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 4) 옥외영업장에 스피커 등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6)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7) 옥외영업장에는 조리나 세척 등을 위한 조리장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테라스형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장 시설물

- 1)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장의 경우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바닥재료, 단차 및 바닥, 담장, 차양, 의자, 테이블, 기타)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제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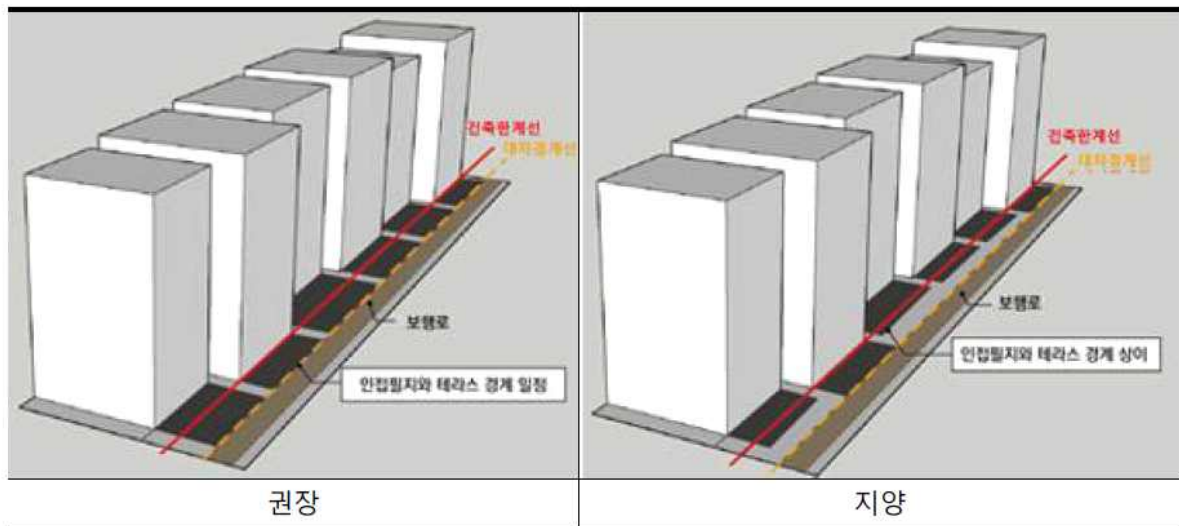
1.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타 법 위반사항이 없는 위치만을 옥외영업 장소로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 등을 취급하는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여야 하며,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 경계면 인근에서 손님 등이 흡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8. 옥외영업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면적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옥외조리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규정

○ 전면공지의 테라스형 공간 설치 기준

- 전면공지와 접하는 도로(보도)와의 경계에는 연석(경계석)을 설치하여 도로와 전면공지를 구분한다.
- 전면공지의 깊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테라스 공간은 최대 3m까지 조성할 수 있으며, 인접필지의 전면공지 깊이와 동일하게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깊이가 3m이하인 경우에는 전체공간을 테라스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며, 이경우에도 인접필지의 테라스 깊이와 통일하게 조성한다.

【 테라스 공간 조성 예시 】



○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설물 세부사항

- 단차 및 바닥
 - 테라스형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의 경우에는 도로 노면 또는 도로경계석 상단높이)와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사지역 등 지형여건에 따라 서르치하는 데크 형태의 테라스는 예외로 한다.
 - 바닥포장은 연접 도로(보도) 및 인접 필지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 있는 재료로 한다.
- 담장(난간)
 - 전면공지에는 담장, 기둥, 천막, 바람막이(비투시성)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데크형태의 테라스에는 0.9~1.2m의 투시형 난간을 설치할 수 있다.

- 차양(어닝)

- 차양은 방수기능의 재질 및 접이식 구조(고정식 설치불가)로 설치하며, 인접필지의 차양 높이와 일정하게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차양의 프레임은 불연성 소재를 사용한다.

- 의자 및 테이블

- 의자와 테이블은 이동식 및 접이식만 사용한다(고정식 및 일체형 사용 불가)
-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일체형 의자와 테이블은 사용할 수 없다.

- 기타사항

- 테라스형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옥외영업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과 연결 도로(보도)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설물 예시 】

